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구매 조건

본 주문서는 본 주문서를 발행하는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매수인”)가 본 주문서를 발행받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에 대하여 아래에서 규정된 구매조건에 따라 본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 물건, 서비스 또는 설비(이하 “제품”)를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주문서에 따라 주문확인서를 발행하거나 구매조건 중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는 경우 본 구매 조건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된다(이하 “본 계약”). 매도인이 본 구매조건과 배치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며, 그러한 배치되거나 추가된 조건은 본 계약에 부가된 새로운 제안으로 해석되며 매수인이 지정한 권한있는 임원이 시행한 문서에 본 주문서 및 매도인이 제안한 (배치되거나 또는 추가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배치 또는 추가적인 조건은 거절되는 것으로 본다. 본 주문서에 따라 매도인이 이행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에서 규정된 구매 조건을 제한 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 가격.**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 가격은 본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마지막 매매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 2. 보증.**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판매되어 운송되는 모든 제품은 매수인이 정한 사양 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사양이 없거나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발행한 사양 또는 매수인이 제공한 샘플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 판매 및 운송되는 모든 제품은 새로운 제품이고, 매수인이 의도한 용도에 충분히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팔 수 있는 제품이고, 품질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술한 보증은 매수인이 제품을 수령한 후에도 존속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하거나 표시한 보증과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보증 또는 해당 법률에 달리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운송된 제품에 기인하여 발생한 비용(합리적인 변호사비용 포함), 손해, 손실, 책임, 벌금 또는 판결로부터 매수인과 구매자를 보호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 3. 검사.** 본 계약에 따라 운송된 모든 제품은 사전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매도인 시설에서의 검사를 받았더라도 매수인의 시설에서 매수인의 최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제품을 승인하더라도 제 2 조에서 언급된 매도인의 보증 내용이 변경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수인은 거절된 제품을 매도인의 지시 및 매도인의 위험 하에 보관하거나 매도인의 비용으로 제품을 반환한 후 하자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본 계약 조항 및 사양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4. 취소.**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매수인의 유일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운송된 제품의 가격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이 이행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인 실제 물품 구입비용 및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직 운송되지 않은 제품의 간접경비 및 기대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Corning Restricted

않으며, 매수인의 책임은 제 1 조에서 규정한 제품 가격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제 4 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물품목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시기 및 운송.** 매수인의 사업 및 영업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적시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필수적 요소이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운송된 모든 제품은 매수인의 서면 지시에 따라 표준 운송상자에 배송을 위해 적절히 포장되어야 하고, 상호 합의된 운송조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에서 정해진 시기, 정해진 물량에 따라 제품이 운송되어야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정해진 일정에 앞서 제품을 선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일정 준수 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일정을 앞당겨 주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제품의 운송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수량보다 많이 초과선적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제품을 반환하거나 가격인상 없이 매수인이 보관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납품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된 물량을 초과하거나 약정된 시간보다 미리 사전 생산을 하거나 생산 준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불가항력.** 운송 또는 제품 승인 실패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 공공의 적, 전쟁, 동 계약서 일자리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 정부의 행위 또는 규정의 준수, 화재, 홍수, 검역, 금수조치, 전염병, 비정상적으로 심한 날씨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 사유들을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운송 또는 제품 승인을 못하거나 지연된 이유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지적재산권 보증 및 손해배상.**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운송된 제품 및 정상적인 목적에 따른 제품 사용이 타인의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 3 자가 매수인 또는 구매자를 상대로 위 권리의 침해를 청구하거나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청구 또는 주장과 관련된 모든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손실, 손해, 책임, 벌금, 또는 판결로부터 매수인 및 구매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매수인에 대한 산출물 양도.**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매도인이 개발한 컴퓨터 파일, 개념, 아이디어, 디자인, 발견, 도면, 발명, 모델, 계획, 프로그램, 일정, 사양,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 코드(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이하 "산출물")은 생성된 때에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저작권의 이익(제한 없이)을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매수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매도인은 그러한 산출물의 복사본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상 제품과 함께 모든 산출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이러한 산출물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제한 없이) 모든 권리, 명의 또는 이해관계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산출물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을 보호, 등록, 실행 혹은 증명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 타당, 편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문서를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행 및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개발한 유형의 산출물이 매도인의 독창적인 것이거나, 공중 영역의 것이거나,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인의 작업물이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작업물이나 지식재산권의 소유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매수인 및 그 고객에게 산출물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청구 또는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손실, 손해, 책임, 벌금, 또는 판결로부터 매수인 및 구매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매도인은, 계약제품, 제품의 사용 및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여 어떤 사람이나 재산에 끼치거나 초래된 모든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손실, 손해, 책임, 벌금, 인적 상해 또는 판결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 임원, 이사, 직원 또는 계열회사를 보호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i) 일방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으로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일방이 화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 (iii) 일방이 제조정지, 영업의 정지·변경·폐지 또는 해산의 처분을 받거나 결의를 한 경우, (iv) 일방이 발행한 어음, 수표를 소정 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거나 부도처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v) 매도인이 3 회 이상 납품을 불이행하였을 경우(단, 본 계약 규정에 의해 매도인이 시정하였을 경우는 제외), 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i)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본 계약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일방(대표이사의 신용불량 포함)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는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영업비밀.**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취득한 모든 데이터 및 기타 정보,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도된 산출물을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위 데이터, 정보 및 산출물을 자신의 재산적 또는 비밀정보 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합리적인 보호 수준 이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 데이터, 정보 및 산출물을 다루는 직원들 역시 매도인과의 별도의 계약 또는 법률의 적용에 따라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홍보 제한/공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고객 리스트, 광고, 또는 언론을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홍보 자료에서도 매수인의 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법률의 준수.**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 안전, 건강, 및 환경 준수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 명령,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도인, 그 대리인, 직원, 대표자 또는 이들의 하도급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위반으로 간주되고, 매수인은 이후 언제든지 (벌금 없이 그리고 제 4 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외에 다른 부담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도인, 그 대리인, 직원, 대표자 또는 이들의 하도급업자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손실, 손해, 책임, 벌금 또는 판결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14. **보험.**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 매도인의 사내에서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본 계약의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후 1 년동안, 매도인은 대외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매도인은 하도급업체에게도 위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5. **양도금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 또는 의무는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합병, 법률 적용 기타 사유에 의해 양도되거나 위탁될 수 없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매수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독립된 계약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 외에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 대리인 또는 유사한 관계를 의도하거나 만들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스스로를 매수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면제.** 매수인이 매도인의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약정, 의무 또는 조건의 완전한 이행에 관하여 일회 또는 그 이상 주장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불이행에 관한 본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불이행을 매수인이 용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18. **변경 금지.** 본 계약의 변경, 수정 또는 연장은 본 계약의 특정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서면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대표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 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효력이 없다.
19.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은 국제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배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선의의 협상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최종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사이트 규칙.**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내(이하 "사이트")에서 매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매도인의 직원과 하도급업자(등급에 관계없이)는 사이트에 있는 동안 매수인의 모든 지시, 규칙,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시, 규칙 그리고 규정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안전 및 보건, 화재 예방, 환경, 시설 관리, 사이트 유지 보수 및 보호, 운송 및 제품 저장, 사내 출입, 직원의 행동, 그리고 공공관계. 사이트 규칙 사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21. **협력사 윤리강령.** www.corning.com/about_us/supplier 에서 확인 가능한 매수인의 협력사 윤리강령(이하 "규범")은 매수인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규범을 준수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동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규범에 위반할 경우 본 계약 및 매도인과의 다른 계약 또는 사업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22. **하도급법 준수.**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